

#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규정

제정 2002. 11. 6. 규칙 제1096호

개정 2011. 10. 26. 규칙 제1277호

개정 2015. 03. 30. 규칙 제1373호

개정 2016. 03. 30. 규칙 제1407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교육원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위치) 본 교육원은 청주교육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) 교육원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업목적 본 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초중등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 및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를 발굴·교육하여 과학, 수학, 정보과학 분야 영재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신장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.
2. 사업내용
  - 가.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, 정보과학 분야의 영재교육
  - 나. 과학영재교육에 필요한 연구수행
  - 다. 기타 과학영재교육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원장) ① 교육원에 원장을 두되,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조직 및 기능)\_① 교육원에는 행정실을 두고,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행정실 : 교육원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
  - 1) 예산 지출 및 연간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보조
  - 2) 관찰지도교사 및 강사 관리를 담당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( 개정 2015.3.30)
- ② 교육원에는 지도교수, 전임강사, 일반강사, 전임연구원,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지도교수는 분야 별 해당학과나 전공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, 전임연구원과 전임강사, 일반강사는 원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5.3.30)
- ④ 강사의 자격은 영재교육법시행령에 따른다.
- ⑤ 원장은 강사와 연구원이 교육원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인정된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

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.

⑥ 강사와 연구원이 교육원 본연의 업무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육원의 위상에 심한 훼손을 초래한 경우는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

⑦ 교육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5.3.30)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원의 기본 운영 계획
2. 교육원의 운영규정 개정
3. 교육원의 예산과 결산
4. 기타 원장이 제안하는 사항

제8조(선정추천심사위원회) ① 영재선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추천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선임한다.

③ 심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교육원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과학영재교육 전문가, 5년 이상을 가진 교육행정 경력자, 그 외 과학영재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원의 과학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, 추천에 대한 심의를 행한다.

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⑥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영재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은 그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.(개정 2015.3.30)

제9조(학급편성과 교육내용) ① 교육원에는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, 지구과학의 중등심화교육과정과 초등수학, 초등과학의 초등심화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, 각 교육과정에서 사사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. 다만 사업계획과 정부 정책에 따라 학급 편성은 매년 탄력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.(개정 2015.3.30)

② 분야별 학급 편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15.3.30)

③ 학생 수는 학급당 20명 내로 한다.(개정 2015.3.30)

④ 각 반의 교육과정은 전임교원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5.3.30)

⑤ 교육원에 재학 중인 학생(이하 학생이라 한다)이 원 소속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⑥ 교육원의 수업은 원격교육과 출석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그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

거쳐 원장이 정한다.

⑦ 원장은 각 분야 별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,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.

제10조(생활기록부 관리) ① 생활기록부는 본원에서 작성관리하며, 수료 후 10년 이상 보존한다.

② 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입학성적, 평가 성적 및 관찰평가 결과 등을 기록한다.

③ 생활기록부에 작성되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하며 연구 목적(추수관리, 논문자료)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.(개정 2015.3.30)

제11조(학생의 선발) ① 학생의 선발 시기는 매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6.3.30.)

②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.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 
(개정 2016.3.30.)

제12조(학생의 상벌) ① 학생의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인정된 때는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학생이 출석 미달, 극히 불량한 수업 태도 등 학생의 자질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는 학생이 소속한 반 지도교수의 의견을 물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 또는 퇴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단, 이와 같은 조치는 즉시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.

제13조(수업료 및 장학금) ① 원장은 소정의 수업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

제14조(자문위원회) 교육원의 교육 내용과 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5조(재정) 교육원의 재정은 국가 지원금과 대학자체 지원금 및 외부 협력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교육원의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2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정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교육대학교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규정은 폐지한

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교육대학교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 관할의 자산은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이관한다.

부 칙(2011. 10. 26. 규칙 제127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3. 30. 규칙 제1373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3. 30. 규칙 제1407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.